



# GLOBAL METHODIST CHURCH

## 총회 커뮤니티: 조직 계획 및 함께 하는 삶을 위한 언약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개정일: 2025년 2월 17일)

(개정: 2025년 10월 3일)

(개정: 2025년 12월 2일)

### 머리말

히브리서 12장 15절 등의 성경 말씀에 따라 존 웨슬리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격려했으며, 1744년 처음으로 동생 찰스 및 몇몇 다른 성직자들과 만나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리와 장정 (장정) ¶701). 그 전통의 영적 계승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교회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모두의 공의를 위해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회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행 15:28)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열망합니다(롬 12:2). 따라서 총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돌보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조직 계획

#### I. 오프닝 세션

글로벌 감리교회는 총회 위원단이 추천하고 연대 협의회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총회를 개최하며,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위원단이 지정한 감독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표단 및 대의원 소개. 공식 명단 발표는 등록 절차를 통해 완료됩니다.
- 총회의 투표 규정을 설정합니다.
- 총회 위원단 보고.
-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조직 및 규약 계획 채택. 계획 및 규약은 회의석 상에서 채택되기 전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총회 비서가 연대 협의회로부터 임시로 임명된 경우에는 연대 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 비서 선거를 실시합니다(¶704.2, 계획 IV). 그 외의 경우에는, 총회 폐회와 함께 직무를 시작할 서기의 선출은 총회의 어느 회기에서든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채택.

글로벌 감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를 삼고 전 세계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G. 기타 비즈니스

### II. 의장

총회의 모든 본회의는 의제위원회(¶704.1)가 지정한 대로 글로벌 감리교회의 현직 및 명예 감독들이 인도합니다. 입법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감독 중 한 명이 소집하며, 이 감독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아래 참조).

### III. 총회 위원단

총회위원회는 총회 준비 전반을 관할하며, 총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총회에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대 협의회에 총 대의원 수를 추천하고, 전 세계 교회에 대한 대의원 수의 공평한 할당 공식을 추천하며, 성공적인 총회 운영을 위한 물류 준비를 조율할 것입니다. 연대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사이에 이 조직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총회 개회 세션에서 비준되어야 합니다.

### IV. 총회 서기

총회는 연대 협의회의 추천으로 총회 서기를 선출합니다. 새 비서의 임기는 총회 폐회 후 시작되며, 이전 비서가 전환 기간 동안 총회 폐회 후 행사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기는 총회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주재 감독 및 연대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비서는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매일의 안건을 실행하고 청원 및 결의안을 처리하는 입법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기는 총회 위원단과 협력하여, 총회 운영과 심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대의원이 총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또한, 비서는 아래와 같이 직권상 겸직위원으로서 총회 행정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이 직책은 유급 직원 직책일 수 있습니다. 총회 회기 사이에 비서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연대 협의회는 다음 총회까지 활동할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 V. 일정

총회에서 소집된 현장 입법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변경으로 인해 일정이 코스타리카에서 구상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의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교회 수와 정규직/정규직과 동등한 목회자 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대의원은 2026년 4월 1일까지 선출되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청원은 2026년 1월 5일부터 접수됩니다. 청원 제출 마감일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 VI. 총회의 위원회들

#### A. 행정 관리 위원회

1. **의제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4명과 평신도 4명으로 구성된 8명의 대의원으로 조직되며, 각 입법위원회 위원장들과 총회 서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정 관리 위원회는 각 입법 위원회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총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청원 심사를 포함하여 본회의의 일일 순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 본회의의 사회자를 선정합니다.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한 번에 하나의 우선순위 안건을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데, 한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청원 의제들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 관리 위원회는 각 본회의가 끝날 때마다 다음 회의에서 다룰 잠정 의제를 발표합니다.

2. **자격 위원회**는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 목회자 4명, 평신도 4명으로 구성된 8명의 대의원과, 총회 서기와 협의하여 자격 승인과 대의원 좌석에 대해 모든 사항을 결정합니다.
3. **참조위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성직자 4명과 평신도 4명, 총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접수된 모든 청원과 결의안을 해당 입법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청원 또는 결의안의 유효성에 대한 청원 서기의 판정을 확인합니다.
4. **공보 위원회**는 3명의 대의원과 총회 서기로 구성되며, 매일 회의록을 심의·승인하고, 총회 후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청원을 장정 내 다른 조항과 조정합니다.
5. **공천 위원회**는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각각 4명씩 총 8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양한 총회 위원단과 협의회 위원으로 봉사할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B. 행정 위원회 구성원**

1. 행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2024년 총회 대의원으로 봉사하였으며(¶ 812.2g), 동시에 2026년 총회 대의원인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2.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8명의 정규 위원 외에도, 2024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연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각 1명이 자격, 참조, 공보(3명의 위원 외), 공천 위원회에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위원회 위원은 총회 개회일로부터 최소 209일 이전에 각 대표단에 의해 추천되어야 합니다. 총회 위원회는 대표단에서 제출받은 후보자들 중에서 각 위원회의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며(¶ 812.2g), 교회의 지리적 분산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 선출은 총회 180일 전까지 연대 협의회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도 입법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C. 입법 위원회**

청원처리의 첫 단계로서 8개의 입법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출된 청원의 수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연대협의회는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두 개의 입법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하나의 위원회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회 위원회는 각 총회에 정해진 대의원 수에 따라 입법 위원회의 최소 및 최대 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대 협의회에서 임명한 청원 서기는 제출된 각 청원의 처리 결과와 근거(채택, 미채택, 회부)를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총회 안건에는 각 입법위원회에 나열된 안건 외에도 입법위원회가 향후 총회를 위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 그룹 또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입법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1. **교리와 성례전**  
교리 성명; 100번대 모든 조항; ¶¶412-421
2. **사회적 증언**  
사회적 증언 성명 및 결의안; 300번대 모든 조항 (이러한 모든 성명은 장정 ¶208.13-14에 따라 본회의에서 75%의 찬성 투표가 요구됨을 전제로 함)
3. **개체 교회**  
¶¶401-411, 422-448, 450-456
4. **사역**  
모든 500의 문단

5. **감리직**  
모든 600의 문단
6. **총회**  
모든 700의 문단; 연회 및 지역회의 경계
7. **헌법, 연대 조직, 재정**  
¶449, 200번대, 800번대, 1000번대 모든 조항
8. **사법행정**  
모든 900의 문단 및 사법 절차

#### **D. 입법 위원회 멤버십**

각 연회 대표단 내에서, 각 대의원은 어느 입법위원회에서 봉사할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총회 개최 12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입법 위원회 구성은 대의원의 선호, 최소 및 최대 위원 수, 그리고 성별, 인종, 민족, 지역 등 다양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총회 위원단에서 결정합니다. 입법 위원회는 평신도 55% 또는 성직자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배정은 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E. 입법 위원회를 위한 절차**

1. **회의 전 회의** — 입법 위원회는 총회 전에 75~6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모여 임원을 선출하고 회의 진행 교육을 받습니다. 임원들의 선출 후, 그들은 화상 회의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고 입법 위원회의 작업을 조직하고 계획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임원** — 첫 회의는 현직 또는 명예 감독에 의해 주재됩니다. 이후 회의는 선출된 위원회 임원들이 주재합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간사와 필요시 분과위원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글로벌하고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리더십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총회위원회는 입법위원회 임원이 선출된 이후 각 위원회의 정기 회의 시작 이전에, 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 **회의 진행 규율 위원** — 가능한 한 각 입법 위원회에는 자원봉사 진행 규율 위원이 배치됩니다. 회의 진행 규율 위원들은 모든 위원회 회의, 총회 소집 전 모든 가상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의 공동 생활을 위한 언약' 및 의회 절차 이행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합니다. 또한 이 담당자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위원회 절차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4. **입법위원회 첫 회의 소개** — 입법위원회 각 위원은 총회 개최 120일 전까지, 위원회 배정(선호) 신청을 제출하는 시점과 동일한 시기에 100단어 분량의 서면 약력을 총회 서기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 소개서에는 사진, 교회와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요약, 관심 분야, 경험 및 전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개서에는 입법 위원회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후 총회 서기실은 번역을 준비·확보하여, 각 위원회의 최초 회의 이전에 모든 위원의 서면 소개문을 해당 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면 각 위원은 이름, 거주지, 평신도/목회자 신분, 임시 연회 또는 지방회 소속을 밝히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5. **정족수** — 모든 입법 위원회 회의 및 안건에 대해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위원회 위원의 1/2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명단 호명이 이루어집니다. 출석 및 결석 기록은 각 회의가 시작될 때 위원장 또는 그 지정인이 위원회 기록을 위해 발표합니다.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회의 날짜 설정** — 각 입법위원회의 첫 온라인 회의 일시 선정은 위원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위원단에서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총회위원회는 안정적인 인터넷과 필요한 기술(기기 포함)을 갖춘 중앙 집결 장소를 마련하여, 해당 여건이 부족한 대의원과 예비대의원들이 그곳에 모여 회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의 시간 및 날짜에 대한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의원이 입법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표단장은 대리 대의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안건** — 온라인 회의 공지에는 서면 안건과, 해당 안건에 관계된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 회의 안건이 게시되어 배포된 후에는, 비본질적인 안건(의장이 결정한 것 같은)은 해당 회의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상정할 수 없습니다.
8. **사안을 표결에 부치기** — 의장이 동의안, 청원이나 수정안이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판단하면, 표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토론 연장을 표결하지 않는 한 즉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청원, 동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토론 없이 진행됩니다. 토론 계속 동의는 해당 청원, 동의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 전에 적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계속하려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원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3분의 2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동의안, 청원 또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론 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투표 결과 공개 발표** — 위원회가 비절차적 조치, 청원 또는 동의안(또는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실시한 투표 결과 및 총 투표 수는 즉시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하고, 본회의 제출을 위해 총회 서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0. **위원회 회의 공개** — 입법 위원회 온라인 회의는 녹화되어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11. **위원회 회의록.**
  - a. 위원회에서의 활동은 정확하게 회의록 형태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과 해당되는 경우 소수 보고서는, 조치가 이루어진 당일 오후 6시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되어 다음날 일간 저널에 게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회의록 외에도 가상 회의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본과 위원회 토론 중에 제공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서면 문서는 교단 웹사이트에서 계속 제공되며, 총회에서 작성되거나 사용된 모든 문서, 청원서, 동의안의 전자 버전은 역사적 가치와 입법 역사 가치를 위해 교단 웹사이트에 아카이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 b. 모든 버전은 역사적, 입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교단 웹사이트에 영구 보존됩니다.

## VII. 천거 및 선거

총회는 천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별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의 위원회 및 위원회에 소속될 멤버를 선출합니다.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원 자격은 총회 대의원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공천 절차(¶803.2).** 연회 및/또는 대표단은 총회 전에 최소 180일 전에 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각 연회는 해당 연회에 소속된 자격을 갖춘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 또는 평신도 가운데 최대 16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연대 사역 위원단 중 하나 또는 두 개, 그리고/또는 항소위협의를 위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최대 100자 이내의 간단한 약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약력은 게시된 후보자 명단에 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인쇄됩니다.

- B. **대표성.** 공천 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회 구성에서 지역, 인종/민족, 성별, 연령 다양성을 고려해 되, 위원들의 재능과 경험을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투표를 할 때 이러한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C. **공천 위원회 절차.** 공천 위원회는 총회 개최 최소 120일 전에 각 위원회 또는 협의회 후보자 명단을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D. **추가 후보.**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전체 후보 명단과, 연회들이 제출한 목록에 포함된 기타 모든 후보자 명단은 사전 총회 자료집에 게재될 것입니다. 천거 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은 별표로 표시 됩니다.
- E. **추가 회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추가 위원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F. **선출될 협의회 및 위원회.**
  - 1. 연대 협의회(¶807.2)
  - 2. 전도, 선교, 교회 개척 위원단(¶808.1)
  - 3. 제자도, 교리, 정의 사역 위원단(¶809.1)
  - 4.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810.1)
  - 5.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단(¶811.1)
  - 6. 총회 위원단(¶812.1)
  - 7. 에큐메니칼 관계 위원단(¶813.1)
  - 8. 연회 위원단(¶814.2)
  - 9. 글로벌 감독 위원단(¶605.1)
  - 10. 연대 항소 협의회(및 대체 위원)(¶920)

## VIII. 대의원 비용

미국 내 대의원의 모든 여행, 숙박 및 일당 비용은 각 연회에서 충당하도록 권장됩니다. 미국 외부에서 온 대의원의 비용은 일반 교회나 다른 연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경비로 항공료가 지원되는 대의원들의 경우, 총회위원회단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예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총회 개최지까지의 왕복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가장 경제적인 조건으로 직항 또는 이에 준하는 일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 외의 회의에서 온 대의원에게는 총회 개최 예정일 전후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착 및 출발을 위한 추가 경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회의 전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식비와 숙박비를 자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대의원이 동일한 차량으로 총회 개최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주차비, 통행료, 그리고 총회위원회단이 공지한 기준 금액에 따른 주행 거리 비용을 포함한 실제 여행 경비를 상환받게 됩니다.

## VII. 대의원 조직

- A. 각 대표단은 대표단 또는 연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각 대표단 단장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B. 대표단장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대체 대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총회를 앞두고 총회 기간 동안 각자의 책임에 대해 안내합니다.
2.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등 총회와 대의원 간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대의원과 함께 총회의 조직 계획과 동행하는 삶의 질서 규약을 검토합니다.
4. 총회에 상정될 입법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5. 입법 위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요청된 대의원 선호를 제출해 주세요.
6. 대표단과 연회가 총회 협의회 및 위원회 후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촉진합니다.
7. 자격 증명 팀에서 개발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적절한 경우 입법 및 본회의에서 대체 대의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 X. 청원 경찰, 페이지 및 회의 전문의원

- A. 총회 위원단 또는 그 지명자는 총회 현장에서 봉사할 마샬, 페이지, 회의 규정 전문가를 모집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샬과 페이지는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 B. 마샬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내에 허가받은 자만 출입하도록 하여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길 안내를 돋거나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C. 페이지는 자료 배포, 투표 안내원 역할(필요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 대의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D. 회의 전문 의원은 본회의와 입법위원회 세션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전문 의원은 총회 대의원이 아니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총회 예산에는 총회 참석 및 참여에 필요한 회의 전문 의원들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의 질서를 위한 언약

### I. 매일의 일정

의제 위원회가 매일의 일정과 의제를 정하며, 모든 본회의와 입법 위원회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본 회의(plenary body)는 통역 서비스와 협의를 거쳐,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야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II.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은 선출된 순서에 따라 좌석에 배정되며, 다만 대표단 의장이 해당 대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의원은 대체하게 되는 해당 대의원의 좌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체의원은 대의원이 발표할 때 대신 대의원석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좌석에 착석하도록 선택된 대체의원은 결석한 대의원과 동일한 신분(평신도 또는 목회자) 이어야 합니다.

### III. 의회 절차

- A. **목적.** 본 규약과 로버트 회의 규칙의 목적은 총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약이나 로버트의 규칙은 회의체 의사 결정 역량을 방해하거나 소수 의견을 침묵시키거나,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의견이 들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본 규약에 포함된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B. **합의.** 가능한 경우, 총회는 전체 교회의 일치를 구현하는 합의 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1705.1에 따라 총회는 로버트 회의 규칙과 총회가 채택한 보충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C. **정족수.** 총회의 소집과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이 정족수 (quorum)를 이뤄야 합니다. 다만, 정족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더 적은 수의 대의원으로도 휴회하거나 하루 단위로 산회할 수 있으며, 최종 회기에서는 회의록을 승인하고, 출석 호명 기록을 명하며, 총회를 무기한 폐회(*sine die*) 할 수 있습니다(1705.2).
- D. **동의 안건.** 입법 위원회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은 청원은 매일 시작되는 동의 안건으로 승인, 반대 또는 회부할 수 있으며, 대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 안건에서 해당 안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E. **의제.** 의제 위원회는 매일 업무가 시작될 때 의제를 추천하고,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제를 채택합니다. 총회 서기는 오늘의 순서와 위원회 보고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유지하고 안내합니다. 의제로 상정된 안건은 채택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심의되며, 다만 총회가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경우, 특정 안건을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심의할 수 있습니다..
- F. **발표자.** 입법 위원회의 투표로 지지된 제안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지명자가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소수의견은 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 그러나 위원회 동의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됩니다(규약 III.14 참조).
- G. **말하기.** 발언을 원하는 대의원은 먼저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서 문제(point of order)나 의사진행 질의(parliamentary inquiry)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언권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락 받은 대의원은 발언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이름, 회의 소속, 발언 이유를 먼저 밝히고 발언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에게 허락 받은 대의원은 다른 이에게 발언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의장은 발언자를 지명할 때 회의장의 여러 구역을 고르게 고려하고, 글로벌 교회의 폭넓은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의원들의 표결로 토론이 연장되지 않는 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찬성 발언 3회, 반대 발언 3회로 제한되며, 각 발언은 최대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어떤 대의원도 질문이나 잘못된 진술에 대한 답변이 아닌 한 동일한 동의안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단, 청원 또는 소수 의견 보고서를 제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은 표결 전에 최대 3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4.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 제한은 언제든지 본회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H. **토론 종료.** 토론 종결 동의(previous question)는 토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 최소한 찬성 발언 2회와 반대 발언 2회의 기회가 먼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제기될 수 없습니다. 동의안이 채택되려면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I. **회의 중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하는 것.**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하려는 대의원은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먼저 관련 규칙을 명기한 뒤 가능한 한 간결하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문제(point of order)는 토론 없이 의장이 결정하되, 회의체에 자문이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회자의 판정에 대해 본회의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때 투표 전에 사회자와 항소인만 3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 J. **동의안.**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재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제한됩니다. 위원회(committee) 또는 위원회(commission)로부터 오는 동의는 재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모든 동의안과 수정안은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K. **선거.**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효 투표 수가 총 유효 투표 수의 필수 비율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유효한 선거로 간주됩니다. 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용지에 채워야 할 공석 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포함해야 하며, 동일한 후보자에게는 한번 이상 투표할 수 없고, 또 이미 선출된 사람들에게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L. **투표.** 투표는 전자 투표 또는 거수 투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 대의원은 회의장 내에 있어야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상황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 그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직후에, 어느 대의원이라도 해당 안건에 대해 계수 표결(count vote)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 투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표는 기립 투표로 이루어지며 안내원들이 개표위원 역할을 합니다. 전자 투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종이 투표에 의한 비밀 투표를 실시하자는 요청은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이때 페이지(pages)들이 비밀 투표의 개표 위원(tellers)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3.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동의안은 가결됩니다:
      - a. 한 비대의원이 의장의 초청 또는 3분의 1의 투표로 입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될 수 있습니다.
      - b. 가부 동수로 표결이 나올 경우, 사회자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 c.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i. 최초 채택 후 규칙을 채택, 일시 중단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 ii. 헌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 iii. 오늘의 특별 주문을 따로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iv. 이전 질문에 대한 요청을 유지하려면.
        - v. 채택된 안건 순서에서 벗어난 비즈니스 고려하기.
        - vi. 본 규약에 명시된 시간 외에 세션을 유지하려면.
- M.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의안.** 다음 동의안은 토론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 1. 최종 회의 종결 이외에, 자격 요건이 안되는 휴회를 위해
  - 2. 규칙을 일시 중단하기 위해

3. 테이블에서 모션을 배치하거나 제거합니다.
4. 이전 질문을 순서대로 호출합니다.
5.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의안을 다시 검토합니다.
6. 토론의 한계를 제한하거나 연장합니다.
7.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기 위해 잠시 멈추십시오.

**N. 대안 및 소수 보고서.**

1. 결의안이나 청원은 대체안(substitution)으로 수정될 수 있으나, 그 대체안은 해당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현재 회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안이어야 하며, 단순히 주동의(main motion)를 부정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위원회 소수의 대체 동의안은 입법 위원회 다수 의견과 동시에 제출되는 소수 의견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됩니다.
2. 입법위원회의 주 발의안 또는 다수 발의안이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동의안은 먼저 제안된 수정안을 고려한 후에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 제안된 수정안을 논의한 후에 대안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 대신 대체 동의안을 채택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3. 대체 동의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체 동의가 본 동의가 됩니다. 대체 동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원래의 본 동의안은 처리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4. 이전 질문에 대한 동의는 질문의 (찬반) 양쪽에서 최소 두 명의 발표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의사진행을 위한 대체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5. 소수의견보고를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해당 청원에 대한 위원회 최종 조치 후 한 시간 이내 (휴식시간 제외)에 입법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 신고서에는 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5명 또는 입법 위원회 구성원의 10%(둘 중 적은 수)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면 요청서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서면 통보(III.N.5) 이후, 대의원은 최대 100단어의 근거와 함께, 소수 의견보고의 실제 제안 문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 보고서는 총회 마지막 날이 아닌 한, 통지한 후 다음 날의 인쇄 마감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날이 총회 마지막 날인 경우, 소수 의견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되 늦어도 통지 당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총회 일일 소식지와 별도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O. 재검토.** 다수 의견에 투표한 대의원이 제안하는 경우, 언제든 본회의 조치에 대한 재고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를 위해 제안된 동의안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재검토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P. 휴회.** 폐회 동의는 정식으로 인정된 대의원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의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안건이 계류 중이거나 표결이 진행 중일 때, 토론 종결(previous question)이 이미 결의되어 후속 조치가 계류 중일 때, 산회 동의가 부결되었고 그 사이에 다른 안건이나 토론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또는 총회 산회 시각을 정하는 동의가 계류 중일 때입니다.

**Q. 미처리 안건.** 총회에 제출된 모든 유효한 청원은 입법 위원회에서 (승인, 불승인, 회부) 처리되어야 합니다. 입법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청원은 본회의에서 (승인, 불승인, 회부)되어야 합니다.

#### IV. 총회에서의 예의

- A. 총회의 대의원과 게스트는 항상 친절, 열정, 애정어린 대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성경적 덕목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의원이 아닌 자는 투표 대의원의 허락 없이는 총회장 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대의원은 단체 또는 위원회 진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타인 비방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총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B.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공간에서는 가상 전자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시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의의 사회자는 재량으로, 회의 예의를 위반하는 사람(갤러리 포함)을 회의실 또는 온라인 모임에서 즉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는 한 현재 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의장이 어떤 사람을 퇴장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은 회의체의 과반수 표결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이러한 위반자의 퇴출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대의원 업무에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이 있으면, 사회자는 언제든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총회의 세션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세션은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되어야 합니다.
- D. 심의 중인 안건과 관련된 자료는 총회 또는 입법위원회의 회의장 경계(bar) 밖에서 배포할 수 있으나, 그 배포는 대의원들의 개인 공간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갖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사용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은 물품들을 폐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 E. 의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입법 자료가 방청석 안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배포가 허용됩니다. 입법 자료를 회의장 경계(bar) 안에서 배포하는 것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V. 총회에서의 예의

회의 초반에 조직 계획과 '함께 사는 질서를 위한 규약'을 채택할 때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후 개정할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채택 이후, 계획 및 규약은 총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수정, 변경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 또는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의회 상황에서는 총회의 행동에 있어 현행판 로버트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